#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규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453

발의연월일: 2024. 8. 30.

발 의 자: 안규백·황정아·염태영

김남희 • 부승찬 • 안태준

이병진 · 김준혁 · 오세희

박용갑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5년 12월 9일 국회에서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이 제정되어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였음.

이를 바탕으로 군인권보호관을 국회 소속으로 두고, 국회군인권보호 관이 군 내 기본권침해 사건에 대해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해결·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국회군인 권보호관법」을 제정하고자 함.

이와 연계하여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군인권보호관, 군인권보호위 원회 및 군인권침해의 조사·구제 등을 비롯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 는 것임(안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삭제, 제4장의2 삭제 등).

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」(의안번호 제3451호), 「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454호) 및「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45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6조제1항 중 "두고, 사무처에는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둔다"를 "둔다"로 한다.

제26조제5항을 삭제한다.

제28조제2항 중 "제4장 및 제4장의2에 따라 위원회 또는 제50조의3제 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위원회가"를 "제4장에 따라 위원회가"로 한다. 제29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.

제45조제1항 단서 중 "군인등"을 "군인이나 군무원"으로 한다.

제4장의2(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9)를 삭제한다.

제56조제1항제4호 중 "제4장 및 제4장의2에 따라 위원회 또는 군인권 보호위원회"를 "제4장에 따라 위원회"로 한다.

제63조제1항제1호 중 "제24조제1항 또는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"을 "제24조제1항에 따른"으로 한다.

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관에 관한 특례) 이 법 시행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에 계속 중인 군인기본권침해(「국회군인권보호관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군인기본권침해를 말한다) 관련 사건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회 군인권보호관에게 이송하여야 한다.

#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-----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5. (생략)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"군인등"이란 다음 각 목의 <삭 제>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을 말한다. 가.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제2조제1호 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・준사관・부사관 및 병(兵) 나.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제3조에 따 른 사관생도 · 사관후보생 · 준사관후보생 · 부사관후 보생, 소집되어 군에 복무 하는 예비역 · 보충역, 군무 <u>원</u> 7. "군인권침해"란 제30조제1항 <삭 제> 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 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 인등의 복무 중 업무 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(「군인

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 본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병영생활을 말한다)에서 발 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를 말한다.

- 8. "군인권보호관"이란 「군인 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 본법」 제42조에 따른 군인 권보호관을 말한다.
- 제16조(사무처) ① 위원회에 위원 | 제16조(사무처) ① ------회의 사무를 처리할 사무처를 두고, 사무처에는 군인권보호관 등다. 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 원조직을 둔다.
  - ② ~ ④ (생 략)
- - ④ (생략)
  - ⑤ 위원회는 군인권침해를 개 <삭 제> 선 ·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.
  - ⑥ · ⑦ (생 략)
- 한 의견 제출) ① (생 략)

<삭 제>

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26조(인권교육과 홍보) ① ~ 제26조(인권교육과 홍보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- ⑥ · ⑦ (현행과 같음) 제28조(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 제28조(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 한 의견 제출) ① (현행과 같 유)
  - ② 제4장 및 제4장의2에 따라 ② 제4장에 따라 위원회가----

위원회 또는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조사 하거나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위원회 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 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 을 제출할 수 있다. 제29조(보고서 작성 등) ① 위원 제29조(보고서 작성 등) ① -----회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 내 용과 인권 상황 및 개선 대책 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 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. 이 경우 보고서에는 군 인 <후단 삭제> 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 다. ② ~ ④ (생 략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45조(고발 및 징계권고) ① 위 제45조(고발 및 징계권고) ① ---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 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 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

-----군인이나 군

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

다. 다만, 피고발인이 군인등인

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 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.

② ~ ④ (생 략) 제4장의2 군인권보호관 · 군인권 보호위원회 및 군인권침해의 조사・구제

제50조의2(군인권보호관) 군인권 보호관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 위원이 겸직한다.

제50조의3(군인권보호위원회) ① 위원회는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 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군인 권보호위원회(이하 "군인권보 호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 은 군인권보호관으로 한다.
- ③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위원회 로 본다.

제50조의4(군부대 방문조사) ① <삭 제> 위원회 또는 군인권보호위원회 (이하 이 장에서 "위원회등"이 라 한다)는 필요하다고 인정하

<u> 무원</u>	
	·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면 그 의결로써 군인권보호관,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군부 대(「국군조직법」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대와 기관을 말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. ② 군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 른 군부대 방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군부대의 장에 게 그 취지, 일시,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통지를 하면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 정되어 국방부장관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군인권보호관 또는 위원이 직접 방문조사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국방부장관은 군사・외교・ 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작전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 제1항에 따른 방문조 사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소명 하여 방문조사의 중단을 요구

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등 은 그 이유가 소명된 때에는 즉시 방문조사를 중단하되,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방문조 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.

- ④ 제1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 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, 위 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 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 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, 방문조사를 받는 군부대의 장 은 즉시 방문조사에 편의를 제 공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군부대 방문 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, 위 원 또는 소속 직원은 군부대 소속의 직원 및 군인등과 면담 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 로 사실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- ⑥ 그 밖에 군부대 방문조사의 방법, 절차, 통지 시기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

제50조의5(군인등의 진정권 보장 <삭 제> 을 위한 수단 제공) 국방부장

관은 군인등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편·전화·인터 넷 등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고,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.

제50조의6(사망사건의 통보와 조 사·수사의 입회) ① 국방부장 관은 군인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즉시 위원회등에 사 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위원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해당 사건의 군 조사 기관 또는 군 수사기관의 장 (「군사법원법」 제2조제2항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제 외한다)에게 진행 중인 해당 사건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에 군인권보호관 및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 우 요구를 받은 군 조사기관 또는 군 수사기관의 장은 진행 중인 조사나 수사에 중대한 지 장을 주지 아니하면 그 입회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<u><삭</u>제>

제50조의7(진정의 각하에 대한 <삭 제> 특례) ① 위원회등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 터 1년 이상 지난 군인권침해 사건 관련 진정으로서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 다고 인정되는 진정의 경우에 는 제32조제1항제4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지 아니 하고 조사할 수 있다. 다만, 진 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서 진정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.

② 위원회등은 군인권침해 사 건과 관련된 진정(법원이나 헌 법재판소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는 제외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제5호 본 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이를 각하하지 아 니하고 조사할 수 있다. 다만, 「군사법원법」 제2조제2항 각 호의 죄와 관련된 진정으로서 그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거

나 종결된 경우에는 군인권침 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 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등의 의 결을 거치고,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를 각하하지 아 니하고 조사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조사는 진행 중인 수사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제50조의8(조사의 방법에 대한 <삭 제> 특례) ① 위원회등은 군인권침 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6조제7 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국 가기관(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 다)의 장과 협의를 거쳐 자료 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, 물건 또는 시설에 대 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국가기 관의 장은 해당 사건 수사가 종결된 이후 자료제출 등을 할

수 있다.

②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제1 항에 따른 위원회등의 자료 등 의 제출 요구, 현장조사 또는 감정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.

제50조의9(피해자 보호조치) ① <삭 제> 위원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국방부장관에게 군인 권침해 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제48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-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를 받 은 경우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피 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 고 위원회등에 그 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.
-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의 요구를 이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요 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등에 문서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.

제56조(인권옹호 업무방해) ① 다 제56조(인권옹호 업무방해) ① -
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1. ~ 3. (생략)
- 4. 이 법 제4장 및 제4장의2에 따라 위원회 또는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나차별행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,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
- ② (생략)
- 제63조(과태료) ①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  - 1. 정당한 이유없이 <u>제24조제1</u> 항 또는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 또는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한 자
  - 2. · 3. (생략)
  - ② · ③ (생 략)

 1 2 /처체되 가야
1. ~ 3. (현행과 같음)
4 <u>제4장에 따라 위원회</u> -
② (현행과 같음)
제63조(과태료) ①
1 <u>제24조제1</u>
<u>항에 따른</u>
2. · 3. (현행과 같음)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